

[노사합의서]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2024년도 1/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2024.03.27.)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사는 직원 복지를 위한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정부장려금을 활용하여 2024년부터 ‘함께해요 우리가족’ 은 1인 10만원을, ‘자율체험(프리데이)’ 는 1인 5만원을 정부장려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예산 부족 시 지원금액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 ‘함께해요 우리가족’ 은 근로시간 內 참여하는 경우 2일에 한하여, ‘자율체험(프리데이)’ 는 1일에 한하여 출장명령서를 사전에 득한 후 실시한다.
(단, ‘함께해요 우리가족’ 은 2일 연속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일 단위로 분리하여 시행 가능하며, 본 건 관련 노사합의일 이전에 既 사용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1일을 추가로 사용 가능함)
3. 제1호 및 제2호의 합의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재직자로서, 임원, 정규직, 전문계약직, 근속연수 1년 이상 기간제(전일제), 정부장려금 지원 사업 수급 대상자로 한다.
(단, 지원대상 범위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함)

본 합의는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날인한 후 공사와 노동조합 1부씩 보관한다.

2024. 3. 27.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박만호

박만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

원명희

[노사합의서]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2024년도 2/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2024.06.24.)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사는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이 업무 유관 학위(야간 대학 학위(학사, 전문학사) 과정, 야간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 및 자격증 취득 과정에 참여할 시 출장 시간을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단, 출장 상선에 따른 출장여비(식비, 일비 등)는 지원하지 않는다.

구분	월(한도)	1일(한도)
시간	16시간	2시간

※ 단,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시 소속 부서장 판단하에 출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2012년 4분기 노사합의(2012. 12. 10.) 내용 중 아래 내용은 폐지하기로 합의한다.
 - 1) (근무평정)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근무하는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는 동일기간 동일직급 평가등급 ‘우’ 등급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다.
 - 2) (경영성과급) 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가~나’ 등급을 받는 경우,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수’ 또는 ‘우’ 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다.
3.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무평정(다면평가) 및 평가급 지급률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 합의는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날인한 후 공사와 노동조합 1부씩 보관한다.

2024. 6. 24.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창

이수창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

원명희

[노사합의서]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2024년도 3/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2024.09.26.)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사는 직원 복리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취업규정 제32조 제1항의 특별유급휴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단, 부천시의 승인을 얻고 부천도시공사 취업규정을 개정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현 행	개 정(안)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u>1일</u> 7. 여성 직원이 임신한 때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실시기준을 따른다. 9. <u>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u>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0.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u> 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u>3일</u> 7. 여성직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9.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36개월 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0.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2. 보수규정에 수소가스안전관리자 수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부천시의 승인 및 부천도시공사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현 행	개 정(안)
※ 관련 수당 없음	○ 수소가스안전관리자 월 30,000원

3. 공사는 합리적인 보상휴가 사용을 위해 단체협약 제26조의4(보상휴가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안)
단체협약 제26조의4(보상휴가제) 공사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를 전제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u>보상휴가 사용은 발생 월을 제외한 3개월 이내로 한다.</u> (이하 생략)	단체협약 제26조의4(보상휴가제) 공사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를 전제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u>보상휴가 사용은 발생 월을 제외한 6개월 이내로 한다.</u> (이하 생략)

본 합의는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날인한 후 공사와 노동조합 1부씩 보관한다.

2024. 9. 26.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창

이수창

부 천 도 시 공 사

사 장 원 명 희

원명희